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년	안 호	250
--------	--------	-----

제출년월일 : 1993. 7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현행 과세면제조례는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에 한하여만 도세를 과세면제 함으로 인하여
- 동일 법률의 적용을 받는 타 유공자와 조세형평이맞지 않아 과세면제범위를 확대시행하여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과 면제대상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면제대상
 - 현행조례에서 상이등급 2급 상이군경중 일부를 제외하던 것을 2급 상이군경은 전부를 면제하고
 - 과세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맞게 재조정 하였음
- 면제세목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 기타 참고자료 (별첨)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상이군경이"를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과세를 면제 받고자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 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별 지]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복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면제신청) ①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등급 증명서를 납기개시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p>	<p>제4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p> <p>②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표 표]

(안 행)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2급	14, 79, 98, 99, 102, 104, 105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1항 (복합호수자)	35, 36,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급 2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7, 49, 50,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

(개정안)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복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참 고 자 료

0 지방세법

0 내무부 조례준칙

근 거 법 규

지 방 세 법 (부 분 발 취)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정직·성실하게 봉사한다."

내 무 부

우 110-760 증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1407호 전화 731-2510 (형) 2516 (공) 733-2733

문서번호 세제13415 13)

시행일자 1993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세정과장

선결	세정과장	지	
점	일자	시	
	시간	결	
수	번호	재	
		공	
처	리	공	
	과	람	
담	당		
	자		

제목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시달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시달 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 시행하기 바람(서울특별시에서 1993. 4. 2. 세정 13415-352호로 신청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 개정조례안 시달로 허가에 같음).

첨부 :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각 1부. 끝.

내 무 부 장 관

차 관 전 결

수신처 : 나 01-06, 10-18

0 0 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상이군경이"를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과세를 면제 받고자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 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별 지]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복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면제신청) ①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등급 증명서를 납기개시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p>	<p>제4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p> <p>②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표 1]

(의 의)

등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u>2급</u>	<u>14, 79, 98, 99, 102, 104, 105</u>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1항 (복합호수자)	35, 36,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급 2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7, 49, 50,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

(개정안)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복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